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0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박홍배 · 한준호 · 황명선
윤준병 · 박해철 · 이수진
박 정 · 이주희 · 강준현
민병덕 · 정준호 · 김영환
김문수 · 고민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